

# 연구성과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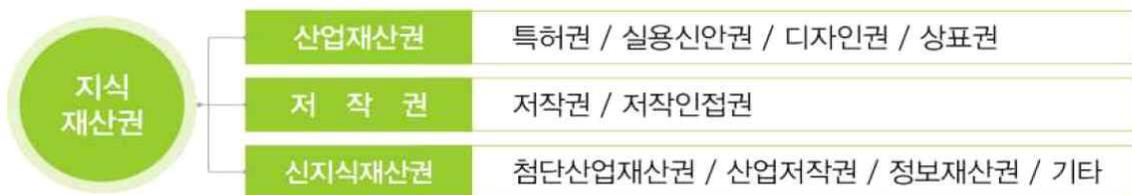


# 연구성과(지식재산권) 관리

## 1.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인가?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해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함(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을 포괄하는 무형적 권리를 뜻함.



## 2. 지식재산권은 왜 필요한가?

### 1)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확보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독점배타적인 무체 재산권으로 신용창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 및 기술판매를 통한 로열티 수입 가능

### 2) 특허분쟁의 예방 및 권리보호

자신의 발명 및 개별 기술을 적시에 출원하여 권리화 함으로써 타인과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타인이 자신의 권리를 무단으로 사용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법적 보호 가능

### 3) R&D 투자비 회수 및 향후 추가 기술 개발의 원천

막대한 기술개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며, 확보된 권리를 바탕으로 타인과 분쟁 없이 추가 응용 기술개발 가능

4)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및 세제지원 혜택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특허기술사업화 자금지원, 우수발명품시작품 제작지원을 비롯하여 각종 정부자금 활용과 세제지원 혜택

3. 산업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며,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받음으로써 배타적 독점권이 부여된 권리를 말함

구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발명 수준이 고도한 것 (대발명)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실용성 있는 고안 (소발명)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이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사례 (전화기)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전자를 응용하여 처음으로 전화기를 생각해 낸 것	분리된 송수화기를 하나로 하여 편리하게 한 것	탁상전화기를 반구형이나 네모꼴로 한 것	전화기 제조회사가 전화기나 포장 등에 표시하는 상호·마크
존속 기간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까지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10년까지 (구법 적용분은 15년)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까지(구법 적용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까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10년마다 갱신 가능, 반영구적 권리)



특허 원천, 핵심기술	실용신안 Life cycle이 짧은 주변 개량 기술	디자인 물품의 외관	상표 상품의 명칭
엔진제어 시스템 ABS 브레이크 시스템 지능형 현가 시스템 변속기 시스템	백미러 컵홀더 자동차도어 의자높낮이 조절장치	차체 형상 의자 형상 전방 램프 형상 리어 스포일러 형상	자동차명칭 (제네시스, 그랜저 등) 제작사 명칭 (현대, 도요타 등)

#### 4. 저작권이란?

지식재산권의 하나로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등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함.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달리 창작과 동시에 보호를 받으며, 보호받기 위하여 별도의 등록절차나 방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음.

구분	저작권	저작인접권
정의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하여 그 표현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됨	저작권에 인접한,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로서, 이 권리는 실연자(배우, 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귀속됨
예시	소설가가 소설작품을 창작한 경우에 원고 그대로 출판·배포할 수 있는 복제·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저작할 수 있는 2차 저작물 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연자가 그의 실연을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할 권리</li> <li>•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li> <li>•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녹음·녹화·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동시중계방송 할 권리</li> </ul>
보호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람이 저작자인 경우에는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시작되어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과 죽은 다음 해부터 70년간</li> <li>• 법인이나 단체가 저작자인 경우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70년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연의 경우의 그 실연을 할 때부터 70년간</li> <li>• 음반의 경우에는 음을 최초로 음반에 고정한 때로부터 70년간</li> <li>• 방송의 경우에 방송을 한 때부터 70년간</li> </ul>

#### 5. 신지식재산권이란?

전통적인 산업재산권, 저작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면서 경제의 발전 및 변화와 함께 그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된 새로운 지식재산권을 의미함.



## 6. 우리 특허법의 기본원칙 및 특허등록요건

### 1) 선출원주의

(1) 동일한 발명(고안)에 대하여 누구에게 특허권(실용신안권)을 부여해 줄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

- 선출원주의 : 먼저 출원한 자에게 부여 (대한민국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가 채택)
- 선발명주의 : 먼저 발명한 자에게 부여

(2) 시기적 기준

- 다른일자출원 : 먼저 출원한 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음
- 같은일자출원 : 협의(협의 불성립시 쌍방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없음)

(3) 주체의 동일성 : 타인 간은 물론 동일인 간에도 적용

### 2) 제출서류의 효력발생시기

(1) 원칙 : 도달주의(특허법 제28조 제1항)

- 특허청에 제출하는 출원서 등 서류는 특허청에 도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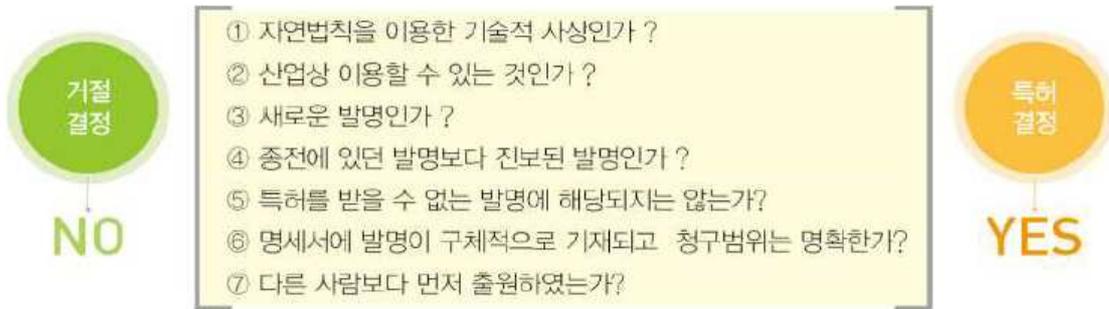
(2) 예외 : 발신주의(특허법 제28조 제2항)

- 도달주의에 의할 경우 특허청과 당사자 사이의 거리에 따라 불공평한 결과가 생길 수 있음.
- 특허법은 이를 시정하기 위해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 발신주의를 따르고 있음.

### 3) 속지주의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하여 그 나라에서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 국가에서 독점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음.

#### 4) 특허결정요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지폐 위조기, 도박에 필요한 기구, 아편흡입기구 등에 관한 발명)(특허법 제32조)
- 국방상 필요한 경우(정부는 정당한 보상금 지급)(특허법 제41조)

### 7. 특허출원시 유의사항

#### 1) 선행기술 존재여부 확인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먼저 출원한 자가 등록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 따라서 선행기술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선행기술은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특허정보 검색서비스인 “키프리스”에서 확인 가능함. 선행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특허등록이 안되는 것은 아니며, 선행기술에 비해 기술적 진보성이 있거나 부가적 기술이 있다면 등록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봐야 함.

#### ▣ 국내 검색 사이트

기관	주소	구분
한국특허정보원(KIPI)	<a href="http://www.kipris.or.kr">http://www.kipris.or.kr</a>	무료
과학기술정보통합서비스	<a href="http://www.ndsl.kr">http://www.ndsl.kr</a>	
웍스(WIPS)	<a href="http://www.wipson.com">http://www.wipson.com</a>	유료
위즈도메인(WISDOMAIN)	<a href="http://www.wisdomain.com">http://www.wisdomain.com</a>	
줌테크놀로지[브랜드워치]	<a href="http://www.brandwatch.co.kr">http://www.brandwatch.co.kr</a>	
마크프로	<a href="http://www.markpro.co.kr">http://www.markpro.co.kr</a>	

## ▣ 해외 산업재산권 검색 사이트

기관	주소		구분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국제특허	<a href="http://patentscope.wipo.int">http://patentscope.wipo.int</a>	무료
	국제상표	<a href="http://www.wipo.int/branddb/en">http://www.wipo.int/branddb/en</a>	
	디자인	<a href="http://www.wipo.int/designdb/en">http://www.wipo.int/designdb/en</a>	
Cambia(Patent Lens)	<a href="https://www.lens.org/lens">https://www.lens.org/lens</a>		유료
Google(Google Patents)	<a href="https://www.google.com/patents">https://www.google.com/patents</a>		
Questel	<a href="https://www.orbit.com/">https://www.orbit.com/</a>		
THOMSON REUTERS	<a href="http://thomsonreuters.com">http://thomsonreuters.com</a>		유료
LEXISNEXIS	<a href="http://lexisnexis.com/totalpatent/">http://lexisnexis.com/totalpatent/</a>		

### 외국특허청에서 산업재산권을 검색하시려면,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http://www.kipo.go.kr)) → 지식재산권제도 → 해외 주요사이트 → 국제 특허검색DB에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2) 특허출원전까지는 비밀유지가 필수

특허는 신규한 기술에 대하여 공개를 대가로 독점배타권을 주는 것으로서, 이미 공개된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음. 따라서 새로운 기술이 있고 특허출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공개하기 전에 특허출원을 해야 함. 여기서 공개라 함은 논문발표, 박람회 출품, 간행물 발표, 인터넷을 통한 게재 등을 포함한 거의 모든 경우의 공개 행위를 말함. 다만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공지 등이 되지 않은 발명으로 인정될 수도 있음. (특허법 30조)

### 3) 특허출원에서 권리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청구항

특허권은 신규한 기술을 문장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되어진 문장이 곧 그 특허의 권리가 됨. 따라서 그 문장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권리범위가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음. 권리범위가 넓을수록 더 많은 독점배타권을 가질수 있으므로 청구항 작성에 더욱 고민을 해야 함.

[자료출처: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2017)/특허청]